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가단5052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상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5,728,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28,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소1217303 판결에 기하여 10,326,584원 및 그중 7,758,545원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1. 22.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E, 피고, F, G, C은 2020.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피고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20. 2. 13.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20.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고, 그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실제포 피고가 H에게 매도한 후 대금을 분할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¹⁾ 또한 피고는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0. 3. 23. H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21의 개별주택가격은 136,000,000원이므로, 그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27,200,000원이며, 이는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15,728,993원²⁾을 넘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의 채권액인 15,728,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28,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경기도 동두천시

지목 : 대

면적 : 183㎡

2.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 경기도 동두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건물내역 : 연화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지하 89.20㎡

1층 89.20㎡

1)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2) 2021. 3. 10.까지의 채권액 합계이다.